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지내도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도로의 정의에 포함하여
동 장소에서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제재 근거 마련〉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0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9.
3. 회부연월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지상·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방문자·택배·배달·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의 종류에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 도로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마목).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교통안전법」 제2조 제10호의 단지내도로의 정의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부분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u><신 설></u>	
라. 그 밖에 <u>현실적으로</u>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u>공개된</u>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
	마.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u>현실적으로</u> ----- ----- ----- <u>있는</u> ----- ----- -----
2. ~ 35. (생략)	2. ~ 3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단지내도로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단지내도로 및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과속(「도로교통법」 제17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¹⁾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며, 인명사고의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운전의 정의, 법원의 관련 판례, 「교통안전법」상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62년 당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체의 장소로 정의되었는데, 이후 유료도로와 농어촌도로가 추가되었지만 동 개념의 주요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법률 제941호 1962. 1. 20. 시행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말한다.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시행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등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법률 제3744호 1985. 2. 5. 시행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법률 제7545호 2006. 6. 1. 시행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시행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000년 선고한 판결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운전 및 도로에 관한 정의 조항을 해석하여 처분청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해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행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²⁾

2) 대전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누118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된 곳인 청주시 ○○구 ○○ ○○아파트 주차장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파트경비원들이 ○○아파트 시설물의 일부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와 관련하여, 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형태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음.³⁾

(가)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 1662 판결,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처분청이 운전자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해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 동 판결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

3)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이 유]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의 정의⁴⁾가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음. 2011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 과로·약물운전,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고,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보행자 보호 조항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함.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및 「고등교육법」

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이유]

3.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의미함.⁵⁾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⁶⁾에서 정하고 있음.

5)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6)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용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동 규정은 단지내도로를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단지내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15,45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10명이 사망했으며 18,942명이 부상을 입음.

< 아파트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사고(건)	2,862	2,881	3,176	3,217	3,316	15,452
사망(명)	44	41	38	41	46	210
부상(명)	3,588	3,507	3,939	3,921	3,987	18,942

자료: 경찰청

- 점검일시·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⑨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절차·방법·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참고로, 부칙(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단지내도로 등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등이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함.⁸⁾ 2026년 5월에는 충남 보령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26년 3월에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함.⁹⁾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아동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고, 공동주택단지 등과 같이 다수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도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사적 영역에 교통경찰권이 과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내도로 등 사유지에 공법적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8) 동 사건 발생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이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당시 경찰청에서 마련한 대책은 아래와 같음.

<대전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건 관련 경찰청 대책>

①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일시정지할 의무인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제27조제6항)
 ② 보행자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30구역 신설
 ③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
 ④ “도로 외”, “30구역”, “(전용도로에 통행이 허용된 차마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 사고 야기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신설) ※ 법무부와 협의 필요

※ 자료: 경찰청[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8년 2월 14일 의안번호: 2011968) 검토보고서 105면에서 재인용]

9) 중앙일보 2026년 5월 20일 기사, “집 코앞에서 차에 깔려 사망...7세 참변 부른 ‘아파트 불법 주차’”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는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도 포함되는 점,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관리 규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임.

경찰청은 입구에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입주민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은 사유지에 해당하는데, 해당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편입하여 일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인 불법 주정차, 무단 횡단 등을 단속하면 과잉단속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험적 요소가 존재함.

그리고 경찰청은 단지내도로가 현행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시장등) 및 횡단보도(시·도경찰청장)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만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문제와 아파트 비거주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장등과 시·도경찰청장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시,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¹⁰⁾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약물운전·사고후미조치·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적용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개별조항을 신설·개정하여 도로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하도록 함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는 입주민, 방문객, 택배·배달 차량 등이 상시 이용하는 생활교통 공간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부 통행로인 만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 개념을 인용하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취지와 법적용 대상의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향후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를 추가할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경우 「교통안전법」상 단지내 도로에 대한 규정과 상충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2026년 1월 기준 전국에 17,589개가 있으며 약 1,048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343개가 있음.¹¹⁾

그리고 개정안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모든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의미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약 30만개가 있고 약 1,58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5

11)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 대학알리미 > 공시대상대학 > 설립별 기준 분류표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40/intro.do>

참고 1 공동주택 현황 (2026년 1월 기준)

□ 의무관리대상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2026. 1. 기준)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시도	전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307,834	15,851,336	17,589	10,481,561	290,245	5,369,775
서울	106,143	2,782,147	2,358	1,412,998	103,785	1,369,149
부산	24,098	1,151,501	1,224	738,947	22,874	412,554
대구	9,100	749,719	1,018	588,050	8,082	161,669
인천	26,362	1,077,517	973	701,604	25,389	375,913
광주	2,466	491,965	777	383,184	1,689	108,781
대전	5,022	445,381	469	353,641	4,553	91,740
울산	4,633	342,177	463	241,537	4,170	100,640
세종	443	141,356	188	120,209	255	21,147
경기	83,742	4,442,684	4,658	3,040,915	79,084	1,401,769
강원	3,502	427,708	671	315,240	2,831	112,468
충북	4,122	474,753	610	335,455	3,512	139,298
충남	6,436	637,233	799	460,068	5,637	177,165
전북	3,603	493,820	707	347,614	2,896	146,206
전남	3,523	441,994	565	286,212	2,958	155,782
경북	9,183	674,992	854	448,607	8,329	226,385
경남	9,349	920,120	1,148	671,639	8,201	248,481
제주	6,107	156,269	107	35,641	6,000	120,628

참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